# 2023년도 제5차 재무경영위원회 회의록

# I 개 요

- □ 일 시: 2023. 12. 11.(월) 14:00~15:20
- □ 장 소: 1호관 507호 영상회의실
- □ 참석현황: 재적위원 20명 중 참석 16명, 불참 4명
  - O 참석위원(14명)
  - 위원장 유우식, 위원 박종돈, 위원 최병조, 위원 박용호, 위원 서정현,위원 김석철, 위원 천성철, 위원 노지승, 위원 김경선, 위원 이광호,위원 최수봉, 위원 이헌구, 위원 조병관, 위원 송인석
  - O 불참위원(6명)
    - 위원 한민섭, 위원 김동원, 위원 김동배, 위원 조길수,위원 김동배, 위원 임조순, 위원 이주호

# II 회의결과

- □ 보고안건: 성립전경비 사용승인 보고
  - O 안건요지 [보고자: 재정예산팀장]

#### ○ 추진배경

- 가.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성립전경비에 대하여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되기 전 사용승인 내역을 보고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가. 2023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제4조(보조금 집행)
  - 나. 인천대학교 법인회계 2023년도 예산편성지침

#### ○ 주요내용

가. 기 간: 2023. 9월(2회 추경 의결 이후) ~ 현재

나. 승인건수: 8개 부서, 8건

다. 승인금액: 2,659,609,000원

라. 개선사항

- 사용승인 결정 시 교학부총장 보고·승인을 득하여 예산 편성

- 24년도 예산편성지침 상 사용승인 절차 명시

·보조금 교부  $\to$  성립전예산 요구  $\to$  사용 승인(교학부총장)  $\to$  (재무경영위원회 보고)  $\to$  차기 추경 반영

마. 행정사항

- 2023년도 법인회계 제3회(정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

# □ 보고안건: 인천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안)

O 안건요지 [보고자: 총무과장]

#### ○ 주요내용

#### 가. 운영개요

- 시 기: 2024. 3월 ~ 계속

- 운영형태: 직장어린이집(민간 위탁)

- 모집정원: 총 7개반(만1세~만5세) / 69명(총 정원)

- 운영인력: 원장 1명, 담임교사 7명, 기타(보조, 연장, 조리) 7명 등 총 15명

#### 나. 소요예산

- 세입예산 (어린이집 기준)

(단위: 천원 / %)

구 분	사업주부담 (대학)	정부지원 (보건복지부)	수익자부담 (학부모)	보조금 (지자체)	합계
_ 금 액	453,000	277,000	74,000	102,000	906,000
비율	50.0	30.6	8.2	11.2	100.0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육비용의 50% 이상 부담

※ 정부지원보육료. 학부모 부담경비. 지자체 보조금은 모집 정원 69명으로 산정

- 세출예산 (어린이집 기준)

(단위: 천원 / %)

구 분	인건비	운영비	보육활동비	선택보육비	재산조성비	합계
금 액	510,000	94,000	103,600	98,000	100,400	906,000
비율	56.2	10.4	11.4	10.9	11.1	100.0

※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 대비 100% 편성한 것으로 실제 편성 시 줄어들 수 있음.

## O 주요 질의 및 응답

- 직장어린이집으로의 전환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 201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대체 보육수당이 폐지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주로 분류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해야 하나. 그간 연수구에 위탁운영을 하여 운영해옴.
  - □ 위탁계약 만료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었으나, 연수구청 측의 요청 및 법령상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에 의하여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추 진함.
-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사업주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질의함.
  - □ 법령에 따라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사업주부담금 453,000천원을 연수구에서 부담하고 있었으나, 직장어린이집 전환에 따라 해당금액을 우리대학이 부담하게 됨. 그 외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부지원금 270,000천원 지원, 지자체보조금 102,000천원 지원, 학부모부담금 74,00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로 연수구 측으로부터 기관보육료를 약 70,000천원 가량 지원받을 예정임. 향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액에 대해서는 심의할 계획임.
- 직장어린이집 모집정원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질의함.
  - □ 법령 및 실제 현원, 학내 수요조사 결과, 예산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집정원을 산출함(84명→69명).
- 차기 재무경영위원회에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제정안 안건 상정 시, 심의자료에 향후 연도별 어린이집 원생 수에 대한 예측이 담긴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자료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심의할 예정임.

※ 안건명을 「인천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안)」으로 수정

□ 제21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여비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안건요지 [보고자: 총무과장]

#### ㅇ 제안사유

가. 연구출장의 효율적인 수행 및 연구 예산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종전 의 규정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별표 2]의 운임표 개정

・제2호-나 항공운임 단서조항

'단, 항공시간 5시간 이내인 경우 2등 정액 금액으로 지급함' 삭제

## O 주요 질의 및 응답

여비 규정에 관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지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이에 대하여 향후 별도 지침을 제정할 것을 요구함.

### O 심의결과: 수정가결

	당 초						수 정				
	<u> </u>										
_					(단위 : 원)		(단위 : 원)				
	우인			비고		구분 운임 비고			비고		
	지 1 코 제 2 호		(중략)	1등 정액 (First Class) 실비 중간 정액 (Business Class) 실비 중간 정액 (Business Class) 실비 (Business Class) 실비 (단, 항공시간 5시간 이내인 경우 2등 정액	예산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인 요금 지급		제 2 호	1	(중략)	1등 정액 (First Class) 실비 중간 정액 (Business Class) 실비 중간 정액 (Business Class) 실비 (단, 항공시간 5시간 이내인 경우 2등 정액	예산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인 요금 지급하고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호			2등 정액 (Economy Class) 실비	등 정액 omy Class)		제3	3호		2등 정액 (Economy Class) 실비	
	증 영수			항공영수증			증빙 영수증			항공영수증	

□ 제22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국제교류원 교육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안건요지 [보고자: 국제교육팀장]

#### ㅇ 제안사유

- 가. 국제교류원 조직개편에 따른 변호사 자문 결과 반영 및 상위법령에 근 거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함
- 나. 한국어교육의 내실화 및 한국어연수과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수생의 수료성적, 강사채용 심사 기준, 주임강사 수당 등을 개선하고자 함

#### ㅇ 주요내용

- 가. 변호사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제2장 및 제3장의 제목을 "한국어교육센터" 와 "외국어교육센터"로 변경
- 나. 한국어연수과정 수료생들의 수료 성적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 다. 근로장학금의 시간당 장학금액을 본교 교내 봉사장학생 지급기준 준용
- 라. 우수한 한국어강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서류전형 배점 조정
- 마. 한국어교육 주임 및 급주임 강사의 업무강도 및 처우 등을 고려하여 현실 에 맞게 강사수당 조정
- 바. 「평생교육법」 등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맞추어 '환불'을 '반 환'으로 정비

# O 주요 질의 및 응답

 23년도 겨울학기가 내년 2월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명확한 지침 시행을 위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제안함.

# O 심의결과: 수정가결

당 초	수 정
부 칙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4년도 봄학기부터 시행한다.

# □ 폐회선언

O 이상 보고와 논의를 종료하고, 위원장이 15시 20분에 폐회를 선언함

# 2023년도 제5차 재무경영위원회 회의결과

Ŧ	<sup>1</sup> 분	안 건 명	심의결과
보 고		성립전경비 사용승인 보고	_
		인천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안)	_
الم الم	2023-21	인천대학교 여비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수정가결
심의	2023-22	인천대학교 국제교류원 교육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수정가결

2023. 12. 11. 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0
위	원 장	유	9	식	(서명)
위	원	中	종	돈	AMEN
위	원	최	병	조	(8/18)
위	원	박	용	ই	(村里)
위	원	서	정	현	togeth,
위	원	김	석	철	一個個人
위	원	한	민	섭	(서명)
위	원	김	동	원	(서명)
위	원	노	지	승	(GREEN).
위	원	김	경	선	(X) FE W
위	원	0]	광	호	exham
위	원	최	수	봉	((4명))
위	원	圣	길	수	(서명)
위	원	김	동	HH	(서명)
위	원	천	성	철	(AP)~
위	원	임	조	순	(서명)
위	원	0]	주	호	(서명)
위	원	조	병	관	(M)
위	원	0)	헌	マ	(1910)
위	원	송	인	석	(对學)